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가대상방문판매업 신설〉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55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0. 2.
3. 회 부 일 : 2025. 10.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뺏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의 제품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계약,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 경제 피해, 시민 간 갈등,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u>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다수인을 집단으로 모집하여营业을 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이하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영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라 한다)의 명단 및 그 허

현행	개정안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소비자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

현행	개정안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조의2,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2.·3. (생략) ② ~ ⑤ (생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2. (생략) ② (생략) 제6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1.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조----- ----- ----- -----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 ----- ----- ---.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행	개정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7. (생략) ④ ~ ⑥ (생략)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u> <u>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u> <u>자</u>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¹⁾상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뺏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²⁾.

1)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여성 노인 노리고, 고수익만 챙겨 떠나는 ‘뺏다방’(당진신문, 2024. 3. 16. <https://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24>), 서부경남 고령층 노리는 ‘뺏다방’ 활개...허위·과대광고 주의보(연합뉴스, 2024. 11. 14.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3133100052>)

- 특히 일정 지역에서 단기간 영업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임.

□ 이에 개정안은 이에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무허가 판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 방문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의 효과가 기대됨.

- 개정안은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³⁾은 방문판매업자등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⁴⁾은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미허가 또는 거짓허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허가제 도입 시 영업 과정에서 우연히 고령층이 많이 모집된 경우, 수범자인 사업자가 허가 의무를 이행하

3)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기 곤란하고, 허가권자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위 뗏다방의 주된 문제점은 폐쇄적인 영업 방식과 사업자가 수시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현장 적발이 곤란하여 단속이 어렵다는 점, 기만적 상행위와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어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⁵⁾상 변경된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 신고의

5)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 ⑤ 방문판매업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무(제5조, 개정안 제5의2조제1항 및 제2항), 정보제공(제7조), 청약철회(제8조), 금지행위(제11조)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는 경우 현장 적발 또는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6).

-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뗏다방 관련 미신고 영업조치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공정위 및 지자체 방문판매업 미신고 영업조치 내역>

구분	대표조치일자	위반유형	조치	비고 (사건번호 또는 조치 지자체명)
공정위	2023.6.20.	제5조 제1항 미신고 영업 행위	시정 명령	2021특수2458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6) 소위 뗏다방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폐쇄적인 영업 방식과 사업자가 수시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현장 적발이 곤란한 점에 있으므로 일선 지방정부의 점검 역량을 확충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분	대표조치일자	위반유형	조치	비고 (사건번호 또는 조치 지자체명)
	2023.10.4.	제5조 제1항 미신고 영업행위	경고	2022특수1656
지자체	2023.12.5.	제5조 제2항 -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권고 및 폐업확인 에 따른 직권말소	안양시 동안구청
	2025.8.25.	제5조 제2항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권고	서울시 중랑구청
	2025.8.25.	제5조 제2항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권고	서울시 중랑구청

* 공정위에서 조치한 두 건은 다른 주된 영업분야(태양광 발전설비, 증권업 등)가 있는 사업자가 가구방문, 노상모객 등의 행위를 하다가 미신고영업으로 조치된 건으로 뺏다방과 무관하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세 건은 변경신고를 누락한 건으로 마찬가지로 뺏다방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으로도 뺏다방 등 유사 방문판매업체를 규율할 수 있고, 허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5